『구립도서관 건립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 392

제출연월일 : 2022. 11. 10.

제 출 자 : 서구청장

1. 제안사유

○ 내당권역내 공공도서관 및 유아·아동의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공공도서관 신축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추진에 따라 건립부지 변경 등을 반영하여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구립도서관 건립 계획

○ 사업개요

구 분	당 초	변 경	비고
사업위치	중리동 116-2, 3	평리로54길 16 (경운초등학교)	
대지면적	547.5㎡(166평)	1,000㎡(300평)정도	▲ 452.5 m²
지역·지구	일반주거지역	교육연구시설	
건축규모	지상5층, 지하1층	지상4층, 지하1층	
연면적	1,470㎡(445평)	2,700㎡(818평)	▲ 1,230 m²
총사업비	105억원	130억원	▲ 25억원
주요시설	문서고, 기계실, 어린이자 료실, 종합도서자료실, 키즈앤맘센터, 전시실, 상상놀이터, 북키페, 프로 그램실, 시무실	문서고, 기계실, 유아-어린이열 람실, 종합도사자료실, 키즈앤맘 센터, 전시실(북키페), 상상놀 이터, 동아리방, 프로그램실, 사무실	

- 주요시설(안)

층 별	공간배치	용도	면 적
계			2,700 m²
지하1층	문서고	문서고, 주차장, 기계실	800 m²
지상1층	정다움터	키즈앤맘센터, 전시실(북카페), 사무실	550 m²
지상2층	정다움터	유아열람실, 상상놀이터	400 m ²
지상3층	책누리	어린이자료실, 프로그램실, 동아리방	550 m²
지상4층	책누리	종합도서자료실, 프로그램실	400 m ²
옥상	휴게공간	휴게공간	

O 추진일정

-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: 2022. 10.~11.
-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심의 및 의회 의결: 2022. 11.
-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심의: 2022.10.~2023.1.
- 건축설계 공모: 2023. 2.~ 5.
- 건축실시설계: 2023. 6.~11.
- 일상감사,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 계약: 2023.12.~2024.1.
- 공사착공: 2024. 2.
- 공사준공: 2025. 7.

나. 공유재산관리계획

○ 관리계획 재산

(단위 :m², 백만원)

구 분		건수	면적(m²)	추정가액	추진기간	비고
취	토지					
득	건물	1	2,700	12,500	23.1.~25.7.	신축공사비 등

○ 공유재산관리계획서(총괄표)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 분		23. 1월~25. 9월			합계				
	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	비고	
		토지							
	계	건 물	1	2,700	12,500	1	2,700	12,500	
취		기타							
77	1.	토지							
		건 물							
득	매입	기타							
¬	2.	토 지							
	기타,	건 물	1	2,700	12,500	1	2,700	12,500	
	취득	기타							

○ 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 :m², 백만원)

일런	재 산 표 시			추 정	취득	취득	취득재산	
번호	구분	소 재 지	수량 (m²)	가 액	(건축) 시기	취득 사유	소유자 주소, 성명	비고
	총계			12,500				
1	토지							
2	건물	서구 평리로54길 16	2,700	12,500	2023.1. 2025.7.	구립고환 건립	대구광역시 서구	신축

[붙임1]

도서관 건립 부지현황 및 현장사진



[관계법령]

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]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 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 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 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-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]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
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-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-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한다.
- 1. 사업목적 및 용도
- 2. 사업기간
- 3. 소요예산
- 4. 사업규모
- 5. 기준가격 명세
- 6. 계약방법
- ⑦ 이 조에서 "기준가격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. 다만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사업비로 한다.

[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]

제12조(궁유재산관리계획)

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,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